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71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박범계 · 김문수 · 이언주
윤준병 · 황명선 · 김준혁
장종태 · 고민정 · 문금주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 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외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다. 교육감이 나목의 활동을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활동

제8조의2의 제목 중 “학교장의 교육활동”을 “교육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학교장”을 각각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돌봄활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돌봄활동 등은 이 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4.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외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u>
<u><신 설></u>	<u>다. 교육감이 나목의 활동을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활동</u>
<u>나. · 다. (생 략)</u>	<u>라. · 마. (현행 나목 및 다목</u>

5.·6. (생 략) 제8조의2(<u>학교장의 교육활동</u>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① <u>학교장</u>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u>학교장</u>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u>학교장</u>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학교장</u>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제8조의2(<u>교육활동</u>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① <u>교육감 또는 학교장</u>----- -----. ② <u>교육감 또는 학교장</u>----- -----. 1. ~ 5.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 또는 학교장</u>----- -----. ④ -----<u>교육감 또는 학교장</u>----- -----.
---	---